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11월 11일(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 2005년 12월 12일(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교육국장 노재전)

가.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는 교육감 소속의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두며
- 안 제3조에서는 정화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수는 13 ~ 17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신설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고 또한 지역교육장 소속하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둘 수 있던 기존의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둔다」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소속하의 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의거 교육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실질적으로 학교환경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교육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해 교육청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회무를 통리”를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사항)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
2. 기타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정화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교보건법</u>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u>도정화위원회</u>”라 한다)를, 하급교육청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u>교육청정화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구성) ①각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도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수의 1/2이상은 학부모 이어야 한다. ③교육청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당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위원수의 1/2이상은 학부모 이어야 한다.</p>	<p><u>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u></p> <p>제1조(목적) ----- 「<u>학교보건법</u>」 - - - - - ----- ----- -----</p> <p>제2조(설치)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u>교육장</u>”이라 한다)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u>정화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구성)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 ③ (생략)</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정화위원회 심의사항) ①도정화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교육청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 2.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6조(심의사항)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 2. 기타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필요한 사항</p>
<p>제7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제7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 (생략)</p>	<p>제8조 (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정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생략)</p>	<p>제9조(간사와 서기)①----- -----간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관계법령발췌서

□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5. (생략)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